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건설공사 변경 계약관련 질의

【 질 의 】

- 건설업체가 건설등록말소 후 공사를 계속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당초의 재료를 이질의 신규재료로 변경할 경우 신규항목 추가 및 신규재료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실정보고를 통해 변경승인을 득한 부분의 신규항목 추가 및 신규항목에 의해 공사비 감액 시에도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업등록말소 후 공사를 계속시공 중 설계 변경 사항 발생시 총공사 부가금액의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당초 도급계약한 공사의 일부로서 그 정산 과정에서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와 달리 새로운 공사를 추가하는 계약이라면 별도 발주 해야 할 것이며,
-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중인 당해계약과 별도로 신규 발주할 것 인지는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본

질의와 회신

질이 변경 되는지의 여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태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수도관 부설공사 계약관련 질의

■ 질 의 ■

- 일반 도로공사 시행시 토공, 관부설, 포장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수도관부설공사의 시행방식 및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 관부설과 포장을 각각 전문공사로 보아 복합공사 형태로 일반건설공사로 발주가 가능한지 또는 포장을 부대공사로 보아 전문건설공사로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저하 예방을 위해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이 가능한지 또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법령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도서구매 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제조를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공고 하는 경우 예「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 2007.09.20) IV.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2) 소액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하의 도서 구매시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공고하는 경우에 낙찰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1호) IV.1.소액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일반공사(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와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용역·물품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은 임의조항이므로 상기 요령과 같이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동 요령에 의하여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소액수의견적제출방식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방식으로 안내공고후 최저가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권고하는 것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4. 사업지구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시에서는 A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A지구가 아닌 B지구 사업으로 준공된 지역에 교통섬을 조성함에 있어 공사지역이 A지역 교통영향평가에서 영향권에 있다는 사유로 A지구의 예산으로 A지구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에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발주 하였는바, 이 경우 사업지구가 다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 발주가 가능하다면 토목과 조경공사와 같이 전기와 조명공사도 A지구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에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5조에 의거 시공중 당초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당초 설계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는 추가공사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기와 조명공사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요건 및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 질 의 ■

-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000도는 특허관련 인공어초사업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4호 사목에 의거 건설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설계금액을 작성하여 지방조달청에 물품구입요구(권리권자와 수의계약)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사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정한 대용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52호)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규정은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며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사목에 의거 물품을 제조하게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지체상금 감면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당사가 체결한 “○○등산로 위험지구 보강 및 데크제작·설치” 계약건의 납품기한이 2008. 1. 5일까지였으나 2007.12.30 폭설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2008. 1. 28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어 작업을 못하고 직원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24조제3항에 의거하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제작·설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지체상금면제 및 공사중지 또는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4조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계약서상 납품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회신

- 다만, 동 예규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폭설로 인하여 현장접근이 어려워 현장에 물품설치를 하지 못하였다면, 상기 예규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곤란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 및 사실관계, 현장사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7. 전면책임감리용역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질의

■ 질 의 ■

- 본 사업의 주요공정인 시가지 기존 합류식 배수관을 분류식 오수 및 우수관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가지 구간중 일부를 주민 민원 및 차량통행을 위해 야간작업 구간으로 제안하고 산출내역서에도 야간작업 공사비를 적용하여 설계에 하였으나 책임감리용역의 내역서에는 야간공사에 따른 추가업무비용이 적용되지 않아 설계도서검토결과 제출시 수당의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 사업시행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조항에서 본 사업은 실시설계시 야간작업 공사구간으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그로인해 감리용역의 추가업무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면 가능하다는 입장
- 그러나 감리용역의 추가업무비용에 대하여 타사에서 적용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당 현장과 같이 야간작업 공사비를 적용한 공정이 있고 감리용역 역시 추가업무비용이 반영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
- 그리고 이 사업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계약서상에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과업지시서 4.3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방법” 다항 상주감리원은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의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

며 당 현장과 같이 야간작업 공사구간으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의 실시설계시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민원 및 차량통행 등)로 인하여 야간작업 공사구간으로 선정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용역의 추가업무비용을 반영해야함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일 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제1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제한경쟁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구에서 전체공정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개발자에게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자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을 요구 하였으나, 기술 개발자가 당해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 시공방법 등 이 신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특수한 장비, 숙련된 기능인력 및 시공 노하우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공사에 수반되는 장비는 당해 기술에만 사용되는 특수장비로 시중에서 임대차가 불가한 바,
- 『기술(특허)사용 협약』체결 시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부기하여 『기술(특허)사용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단서조항을 부기하여 『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와 회신

- 예규 Ⅲ-2-다-②-④호 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기술부분으로 분리된 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특허)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이 가능한 업체만으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의 신기술 사용 협약서라 함은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신기술 개발자가 해당 신기술을 낙찰자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주(사업)부서는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 시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귀질의와 같이 설계상 여러개의 신기술이 적용가능토록 설계되고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이 가능한 경우 여러개의 신기술로 제한경쟁입찰 또는 법령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명 경쟁 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9. 건설공사(토목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

- ○○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으로 도급비가 약27억원 규모의 토목 공사현장으로 07년 5월에 낙찰되어 계약내역서 작성시 제경비 적용을 실적 공사비율로 적용하여 계약체결하였고, (조달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의 수량의 증감 및 공법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제출하였으나 감독관청의 심의 검토 의견서에 제경비율은 순공사비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요율과 조달요율을 비교하여 반영하는 것이라 하여, 수량이 증가되는 공종은 2007년도 조달청 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규로 반영하고 수량이 감되는 공종은 당초 계약당시 내역에서

만 감액을 하여 변경공사비를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제3항제1호에“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용,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용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관련 질의

■ 질 의 ■

- 용역개요
 - 업 무 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민간위탁) 사업
 - 계약기간 : 2005. 10. 1 ~ 2009. 9. 30 (2차, 4년간)
 - 기초금액 : 원가계산서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
 - 계약방법
 - 1차 : 공개경쟁입찰 (2005. 10. 1 ~ 2007. 9. 30)
 - 2차 : 수의계약 (2007. 10. 1 ~ 2009. 9. 30)
 - 지급방법 : 총계약금액 월별 지급

질의와 회신

- 조정품목 : 청소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경유)
 - 조정내용 : 유류(경유) 단가 약 19.7% 인상
 - 계약단가 : 경유 1,211원/ℓ
 - 현 단 가 : 경유 1,449원/ℓ (2008. 1월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6항 본문에서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구격의 자재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물품·용역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은 용역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 용역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조정기준일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은 공사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용역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변경 질의

질의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어 계약체결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조설비의 덕트공사 시행중 환기(RA)덕트의 보온시공에 대하여, 시방서에는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속의 환기덕트는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 보온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고 계약서인 산출내역서에는 환기덕트의 보온물량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현장시공이 지하층 일부를 제외하

고 대부분 비보온으로 이루어져 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금액조정(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공사 시방서라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1호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 귀 질의의 공사시방서의 내용 중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 보온을 하지 아니 않는다는 내용은 공사시방서의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공사시방서의 내용으로 할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나, 공사도면에 환기덕트의 보온시공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도면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라면, 도면의 내용에 시방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계약문서로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시공을 지시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하나,
-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보온을 하지 아니하여도 계약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를 변경 시공토록 요청한 경우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Ⅱ. 예정가격작성 및 원가계산 관련 질의모음

1. 예정가격의 정의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부칙의 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달청 입찰공고시 배정예산과 추정가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에는 소요예정금액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고문에 명시된 소요예정금액은 배정금액 추정금액의 개념이 아닌 예정금액(추정금액)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 입찰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입찰공고문이라 생각되며 이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제안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소요예정금액(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격평점산출시 예정금액(추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아닌 예정가격을 가격평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공고문에 명기된 소요예정금액(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격평점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가격 평가시에는 추정가격을 사용하게 되고, 계약담당자가 별도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란에 예정가격을 대입하여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관급자재 ·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자재 ·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에 추정가격을 명시하고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 적용에 대하여 별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초금액의 정의에 대한 질의

■ 질 의 ■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런데 추정 가격은 공사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중 부가세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인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은 기초금액과는 전혀 상관 없는 금액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초금액은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장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등의 조사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한 후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작성한 금액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발주되는 관급자재 금액은 기초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추정가격에 대한 질의

■ 질 의 ■

- 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5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무엇인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2005.12.30)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질의와 회신

1. 용어의 정의 부분에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의 방법, 내역입찰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은 국제입찰대상·계약방법·입찰공고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 바,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에 해당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신규비목 원가계산요령에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로서 당초 계약(2000.1.28)시 강널말뚝(규격 600*180*13.4)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최근 생산자의 생산중단 규격에 해당되어 부득이 발주처에 실정보고 후 강널말뚝(규격 500*175*16.5)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설계서간 상호모순,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 해당하는 바, 자재의 생산중단·품질 등은 설계변경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는 입찰전에 입찰자가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였고, 계약체결이후 착공시까지 인력·자재확보 등을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 자재수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재

수급방법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공정표·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급방법을 변경하거나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복수예가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 질 의 ■

- 현행 G2B 입찰시스템은 참가업체가 15개의 복수예가 중 2개씩 선정하고,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가를 뽑아 평균 낸 값을 예정가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정된 4개의 예가 중 1개 이상이 동수일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여부와 지자체마다 그 선정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입찰 회계담당자가 동수인 예가 중 높은 수치나 낮은 수치 또는 중간수치를 선택했을 경우, 낙찰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입찰 회계담당자의 재량권에 모든 것이 맡겨진다면 임의성에 의해 낙찰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입찰을 함에 있어서 예정가격 결정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는 바,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중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이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하는 바,
- 이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입찰시스템 운용기관인 조달청(1588-080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입찰시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

■ 질 의 ■

- 입찰시 예가작성에서 단일예가와 복수예가 중 어떤 경우에 단일예가를 어떤 경우에 복수예가를 사용하나요? 원칙이 복수예가인지 궁금합니다. 예가 작성요령에서 복수예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단일예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일예가 사용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나,
-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인 바, 당초에는 단일예가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찰 또는 G2B에 의한 견적제출시 특별히 예정가격을 비밀에 부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예가누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7. 사급자재비의 제경비 누락분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발주 추정가 1억이상 06년11월 계약하여 시공 중인 공사입니다. 발주처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작성 준칙” 회계통칙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예산절감목적으로 사급자재비8천만원에 대한 반영해야 될 제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삭감한 공사로서 시공사는 사급자재비에 대해 제경비 미반영하여 타 공종은 발주처의 당초 원가계산상의 제경비율을 적용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지자체공사에서는 설계변경시 기계약한 사급자재비의 제경비 미반영분에 대해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사급자재비에 대해 제경비 미반영분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시 회계예규에 의거 사급자재비에 대해 직접재료로 계상하여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관련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사급자재비는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 제비율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예정가격 작성시 누락되어 계약체결된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서 단가·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품셈·일위대가표 등의 변경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곤란할 것입니다.

8. 협상계약의 원가계산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제2항의 규정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전 원가계산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의 평가는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바,
-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설계서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일반용역 원가계산 산출 근거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소액수의계약(전자입찰-최저가격 낙찰)을 위해 관련 계약담당에게 공고의뢰를 위하여 과업지시서, 원가계산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1박2일 캠프)의 원가계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실적공사비 또는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으로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장제5절 4-5-1-2의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원가계산방법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바, 내역서의 각 항목·품목 등을 원가계산서의 각 비목에 반영해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기초금액 공개 관련 질의

■ 질 의 ■

- 금번 우리학교에서 시행한 급식 입찰건은 소액 수의 견적 대상으로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형태가 아닌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견적공고 하였으며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하였고, 공고당시 기초금액은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였는데, 1차 입찰 결과 응찰한 3개업체가 모두 예가를 초과하여 유찰되었고, 2차 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낙찰받지 못한 1개 업체가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본 입찰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단일예가를 작성하든 복수예가를 작성하든 모든 입찰건(소액수의견적포함)은 기초금액을 공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등과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품명·규격·수량을 명시한 물량내역 등을 공고하고, 입찰참가자는 규격서등을 열람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며, 내역입찰 또는 계약시 물량내역에 단가·금액을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수의계약 등에는 일반적으로 단일예가를 작성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 제2장의 규정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집행일 5일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을 제출받으면서 복수예가가 아닌 단일예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초금액 작성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 하수관로 원가계산 방법 질의

질의

- 하수관로의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원가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수밀시험 및 CCTV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으로 발주(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 수밀시험, 하수관내 CCTV조사의 원가계산은 건설품셈 21-4(하수관 수밀시험), 21-5(하수관내 CCTV조사)에 의거 순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용역으로 발주시 건설 품셈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또 용역비 산출시 제경비(각종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포함시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원가산출시 건설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용역원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실적공사비 및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하여야 하며,
- 원가계산에 의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 12.30)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의 조사가격 등을 기준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보험료·제경비등)·일반관리비·이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품셈 및 동 조건 등을 참고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대가·노임기준 등에 의하여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12. 수의(소액)계약 추진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질의

질의

- 시설공사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상에는 예가작성 기준을 +3 - -3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개찰 진행과정에서 예가를 +2 - -2로 적용하여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pm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순으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으나,
- 행정착오(전산착오)로 $\pm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순으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는 예정가격이 달라져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전산착오인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로 하여 재공고입찰을 하고, 입찰공고문이 착오된 경우 무효로 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질의

■ 질 의 ■

- 1차공사 낙찰율 : 87.752%, 금차 설계금액 : 금335,760,000원 이런 경우 계약금액 결정 시 금차 예정가격에 전차공사 낙찰율 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차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예정가격비율(99.830%)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은 금차공사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바,
- 금차공사의 예정가격은 설계서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조서는 설계서등의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가격을 조정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14.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적용 관련 질의

■ 질 의 ■

- 관련규정(전선규격) 변경으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결정방법에 있어 거래실례가격, 통계법에 의한 조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중 적용 우선순위가 있는지 조사 공표한 가격이 실제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소하게 반영되어 있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적용에 있어 조사 공표한 단가만을 적용하는지 또는 실 구매단가 반영을 위한 견적단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실적 공사비에 의한 방법,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이 있으며, 이중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하는 방법 중에 택일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5. 예산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질의

질의

- 계약개요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87.745% 이상 최저견적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230,000원
 - 예정가격 : 19,575,475원
 - 낙찰가격 : 19,283,758원 (예가비율 98.509%)
 - 투찰업체수 : 66개 업체
 - 개찰결과 :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65개 업체는 낙찰하한선 미달
- 위와 같은 경우에 낙찰금액이 예산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초과하였는 바, 이 경우에 계약 가능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배정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낙찰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는 전용 또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pm 3\%$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값이므로 높은 예비가격이 추첨될 경우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있어 당초 기초금액 산정시 2-3%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귀 질의사항은 기초금액을 초과 입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당초 산출기초를 작성하면서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약의뢰를 하였거나 이에 대한 가격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6. 사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의 원가산정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발주한 △△경기장 조성공사에서 단가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 되었으며, 사급자재대가 포함된 공사로 원가산정시 사급자재대가 원가계산(일반관리비 이유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의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실적공사비로 하고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고, 원가계산 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고시가격 및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 물가정보가격, 거래실례가격으로 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됩니다.
- 동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사급자재는 재료비로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비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공사의 기초금액 작성 관련 질의

■ 질 의 ■

- 2천만원미만의 공사에서 기초금액 작성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산출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2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로 기초금액을 정하였을 경우 입찰된 업체에서 기초금액 작성시 설계사무소에서 뽑은 내역서가 아닌 견적가에 의한 내역서라며 공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소액수의계약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

질의와 회신

여 물량산출내역을 작성한 후 그것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 제2장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 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입니다.
- 설계대상 업무는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으나 설계대상 업무를 금액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예규, 지침 등에서 설계대상을 금액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 설계서에 의한 물품 예정가격 결정 관련 질의

질의

- 대형건축공사의 관급자급자재로서, 거래실례가격(물가정보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및 견적가격에 의해 설계된 복합물품(무대장치)의 구매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견적서 제출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의해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 거래실례가격 중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증빙서류는 기 계약된 계약서, 세금계산서라면 상세내역도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물품에 대한 업체의 견적서로 가능한 것인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시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시장조사를 하여 거래가격을 조사한 가격이며, 견적서는 거래실례가격이 아닙니다.